

서울시가족센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내부관리계획

제 정: 2021. 2. 10.

개 정: 2022. 5. 9.

제 1 조【목 적】

서울시가족센터(이하 "서울시센터")에서 수집관리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용관리하고 고객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본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에 관련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시행하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서울시센터의 기관장으로 한다.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제 4 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률에 의거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5 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취급자란 서울시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두를 포함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관되고 이용될수 있도록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한 보안(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 6 조【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1. 개인정보에 대하여 분실, 도난, 누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술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 나.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OS,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 이용)
 - 다.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비밀번호)
 -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마.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간접점검 조치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2. 정보보안을 위한 관리수칙을 의무화한다.
 - 가.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 나.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 다. 운영체계(윈도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 사용
 - 라.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유추가 어렵도록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 마.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 바. 공유 폴더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
 - 사. 웹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성 확인 후 설치
 - 아.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 금지
 - 자.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 차. 중요한 자료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제 7 조【물리적 접근제한】

1. 정보가 관리되는 금고 등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담당자에 한하여만 사용한다.
2.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는 곳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출입 및 열람을 제한한다.

제 8 조【자체감사 주기 및 절차】

연 1회 이상 개인정보책임자가 기간을 정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 9 조【자체감사 결과 반영】

1. 개인정보책임자는 자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미비점 개선사항에 대하여 즉시 반영하도록 한다.
 - 가. 부적합한 내용을 확인한다.
 - 나. 부적합한 원인을 특정하고,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 대책을 마련한다.
 - 다. 기한을 정하여 마련된 조치를 시행한다.
 - 라. 시행된 시정 조치 및 예방 조치의 결과를 기록한다.

제 10 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1.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수탁자를 대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http://privacy.go.kr>〉

보호의무 적용대상의 확대

- 분야별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던 개인정보 보호의무 적용대상을 공공/민간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보호 범위의 확대

-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 외 동사무소 민원신청서류 등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도 보호대상에 포함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 처리 금지, 사전 규제제도 신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주민번호외 회원가입방법 제공 의무화 및 암호화 등의 안전조치 의무화: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 처리기기 규제

-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를 민간까지 확대
- 설치목적을 벗어난 카메라 임의조작,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 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기준

- 공공민간 통일된 처리원칙과 기준 적용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요건 확대: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제 도입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
- 대규모 유출 시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예시)

본 ○○시설은 시설 입소 및 이용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주소, 연락처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시설폐지(발급일, 최종퇴소)후 5년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거부가능)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좌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복지예산 집행의 투명성 향상 및 복지시설 관련 자원의 효율적 관리	시설폐지(발급일, 최종퇴소)후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국세청	주민등록번호, 이름, 후원내역	연말정산 기부금 증명자료	제공일로부터 5년
⋮	⋮	⋮	⋮
⋮	⋮	⋮	⋮
⋮	⋮	⋮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 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수집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의 건강정보를 고려한 최적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복지대상자 신상관리 관내 복지서비스 대상자 조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정보 제공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2

※ 상기 내용은 본 기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경우 원활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본 동의서는 상기 목적 외에는 이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서식은 기관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시설정보시스템 업무위탁계약 참고서식]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的 책임아래 성실히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1.
-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제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워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워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위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주 소 :
기관(회사)명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표자 성명 : (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자체감사 체크리스트

자체감사 실시일시: 2021. 00. 00.

자체감사 점검자: _____(인)

구분	체크사항	수행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권한 차등 부여	
	② 방화벽 등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해 개인정보 처리시, OS, 보안프로그램의 접근통제기능 이용)	
	③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암호화 등 조치 (암호화 대상: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비밀번호)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최소 6개월 이상 보관)	
	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조치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자동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관리수칙	① 자동업데이트가 가능한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② 출처, 첨부파일이 의심스러운 E-mail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	
	③ 운영체계(윈도우 등)에서 제공하는 자동업데이트 및 방화벽 기능 사용	
	④ 패스워드는 영문, 숫자, 특수기호 등을 조합하여 유추가 어렵도록 설정, 주기적 변경	
	⑤ 개인 컴퓨터에 부팅, 로그인, 화면보호기의 패스워드를 설정하고 반드시 사용	
	⑥ 공유 폴더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	
	⑦ 웹사이트 방문 시 설치하는 프로그램은 인증서 및 디지털 서명을 참고하여 신뢰성 확인 후 설치	
	⑧ 중요한 자료는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저장하고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 금지	
	⑨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⑩ 중요한 자료는 메일을 통해 주고받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첨부파일에 비밀번호 설정	
물리적 제한	① 정보가 관리되는 금고 등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담당자에 한하여 사용	
	② 종이문서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이 보관되는 곳은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①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과 훈련 대상은 개인정보와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임직원 및 수탁자 대상으로 실시	
	②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과 훈련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정보보호정책이나 절차 및 역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실시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